

교명변경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48
제정일자	2011.10.18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1.10.18.제정 2016.04.01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교명변경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명칭)** 이 부산경상대학교 교명변경위원회는 대학교명변경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 라 칭한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대학교명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한다.
- 제4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, 대학본부 3처 1실의 처(실)장과 교원 대표로 교수협의회평 의원회장, 직원 대표로 직원협의회장,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, 동문 대표로 총동문회장 등 9인으로 구성하다.
- 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교명변경 완료시까지로 한다.
- 제6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 - ② 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재적 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개의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불가 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9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기명날인 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.



교명변경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48
제정일자	2011.10.18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**제10조(출석)**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**제11조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이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위원은 당해 대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재정) ① 학교의 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.
 - ② 제1항의 간사는 부산경상대학교의 사무과장으로 한다.
 -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- 제14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5조(준용 및 운영 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교명변경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48
제정일자	2011.10.18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